

예 산 총 칙

제1조 2018년도 1회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 예산총액	일시차입 한도액
계	692,437,778	23,545,134
일반회계	597,775,389	17,933,262
특별회계	94,662,389	5,611,872
기타특별회계	24,176,135	725,284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주택사업특별회계 • 교통사업특별회계 •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 • 기반시설특별회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813,082 19,165,434 3,857,124 340,495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24,392 574,963 115,714 10,215
공기업특별회계	70,486,254	4,886,588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상수도사업특별회계 • 하수도사업특별회계 •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22,000,000 40,886,254 7,600,000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660,000 1,226,588 3,000,000

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“세입·세출예산” 과 같다.

제3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“해당없음”

제4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“계속비사업조서” 와 같다.

제5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“명시이월사업조서” 와 같다.

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6,742,226천원으로 한다.

제7조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8,4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8조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